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845
- 제 안 자 : 이세열 의원 외 10명
- 제 안 일 : 2020년 8월 12일
- 회 부 일 : 2020년 8월 21일

### 2. 제안이유

-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심의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집행기관”을 “서울특별시 및 정보공개대상기관” 또는 “공개대상기관” 등으로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 및 제12조)
- 나. 공개대상기관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다. 행정정보 공표 대상을 현행화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사항에 담당부서 항목을 삭제함.(안 제5조)

- (1) 행정정보 공표대상 항목 중 현재 시행하지 않는 목표관리제 관련 현황을 삭제하고, 균형성과관리 현황을 신설함.
- (2) 규칙에서 담당부서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직개편 때마다 실제 공표 부서와 규칙에 정해진 부서가 불일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서 담당부서는 제외함.

라.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7조 및 제7조의2, 제7조의3)

- (1) 심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 삭제함.(안 제7조)
- (2) 위원의 해촉 사유와 제척·기피·회피 사유 명시를 신설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마. 종전 제11조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4조를 제13조로 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2020. 8. 26 ~ 9. 2.)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 의견

### 가. 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집행기관’이라는 용어를 ‘서울특별시 및 정보공개대상’ 또는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하고(안제1조, 안제2~8조, 안제11조~제12조), 공개대상기관의 정의를 변경하며(안제2조). 행정정보 공표대상 현행화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사항에 담당부서 항목을 삭제하고(안제5조제1항 및 제3항),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제7조 제2항~제3항, 안 7조의2 및 제7조의3).

※ 본 개정안은 제291회 임시회에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중 정의 규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 보류(제293회, '20.4.27)된 안건을 수정 보완하여 발의된 안건임.

#### <개정조례안 정비 사항>

조문	현 행	개정안	비 고
제1조 본문	산하 집행기관	정보공개대상기관	알기 쉬운 법령으로의 정비 및 조례목적에 맞도록 용어정리
제2조 1호	집행기관	공개대상기관	
제2조 2호	집행기관	공개대상기관	
제3조 1항	집행기관	공개대상기관	
제4조 제목	집행기관의 책무	공개대상기관의 책무	
제4조 1항 ~3항	집행기관	공개대상기관	
제5조 1항 2호, 7호, 16호	집행기관	공개대상기관	
제7조 2항	집행기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공개대상기관	
제7조 6항	집행기관별	공개대상기관별	
제8조 1호, 3호	집행기관	공개대상기관	
제12조 1항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의	서울특별시장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제12조 3항	집행기관	공개대상기관	
제13조 2항	집행기관	공개대상기관	

## 나. 세부 내용 검토

- 1) '산하 집행기관' 및 '집행기관'을 '행정공개정보기관' 및 '공개대상기관'으로 용어 변경(안 제1조 및 안 제2조 등)
  - 안 제1조는 조례 적용대상을 '산하 집행기관'에서 '정보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집행기관' 이라는 용어를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u>산하 집행기관</u> 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정보공개대상기관</u> ----- ----- ----- ----- -----.

- 안 제1조 및 제2조는 '산하 집행기관' 및 '집행기관'으로 대상이 불분명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를 이해하기 쉽고,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정보공개대상기관' 또는 '공개대상기관' 용어로 변경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제293회 임시회에서는 '산하 집행기관'이란 용어대신 '산하기관'이란 용어로 변경하는 개정안(제291회 임시회 제출)을 논의하였으나, '산하기관'은 과거에 정부에서 설립한 기관의 일부가 적용받았던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2003.12.31.)」이 2007년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2007. 4. 1.)」의 제정·시행으로 폐지됨에 따라, 현재 법률적인 용어가 아닌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산하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논의가 있었음.

※ 산하 집행기관으로 용어를 변경할 경우,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 자문기관)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통제하에 속해 있는 기관 및 단체로 확장되어 적용과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

※ 폐지된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산하기관이란 정부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법령에 의하여 직접 정부로부터 업무를 위탁 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함.

- ‘산하기관’이란 용어대신 상위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공공기관’으로 수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나,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공공기관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있어 적절한 용어는 아닐 것으로 보이는데, 법 취지에 맞도록 ‘정보공개 대상기관’ 또는 ‘공개대상기관’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 공공기관 개념

공공기관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쓰이며, 최협의, 협의, 광의 및 최광의의 개념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가장 좁은 의미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으로 정부 소속의 기관과는 별도의 조직과 인원으로 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기관임.

##### ① 공공기관으로 지정할수 있는 기관

정부의 투자·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가리킨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1항)

- i) 다른 법률(개별법률, 민법, 상법 등)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 ii)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 iii)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 iv) 정부와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v)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당해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vi)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는 기관(「법」 제4조제2항)**

i)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ii)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iii)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KBS)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2) ‘공개대상기관’의 정의 개정**

○ 안 제2조는 정보공개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변경하고, ‘공개대상기관’을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를행정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와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으로 정의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u>집행기관</u> ”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같다. 1. “ <u>공개대상기관</u> ”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개정안
<p>2. “청구인”이란 <u>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u>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3. “투자기관”이란 <u>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u> 말한다.</p> <p>4. “출연기관”이란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u>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을</u> 말한다.</p>	<p><u>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u></p> <p>나. 「<u>지방공기업법</u>」에 따라 <u>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u></p> <p>다. 「<u>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2조 제1항에 따라 <u>서울특별시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u></p> <p>2. ----- <u>공개대상기관에 행정정보의 공개를</u> ----- -----.</p> <p>&lt;삭제&gt;</p> <p>&lt;삭제&gt;</p>

- 현행 집행기관 정의로 지방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를 과거 ‘본청’으로 이해한 관행에 따라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었는 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정의하는 개정안은 적정한 것으로 보여짐.

○ 현행 제2조제3호의 “투자기관”이라는 용어를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기관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으로 구분하고 있을 뿐,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투자기관’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바, 삭제하고, 안 제2조제1호 나목으로 개정하는 것은 올바른 명칭 및 용어 사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정부투자기관 관리 기본법」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과 함께 2007년에 폐지됨.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투자기관"이란 서울특별시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와 공단을 말한다.
4. "출연기관"이란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 또한, 현행 제2조제4호의 “출연기관”의 정의도 “현행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와 같이 정의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4. 3. 24. 제정. 2014. 9. 25. 시행)되어 있는 바, 개정안과 같이 삭제하여 관련 법령과 정의규정을 일치시킨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 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법」(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본 조례의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나, 보다 적절한 적용대상의 설정을 위해 ‘정보공개대상기관’의 범위에 대한 면밀한 법적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법률자문요약]**

자 문	자 문 의 견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5천 만원 이상의 보 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 보공개대상기관 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자문 1 (긍정)	-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의 출연 및 출자기관에 대하여 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실적보고를 제출받고 지정명령 등을 할 수 있으므로, <u>서울시의 소관사무의 범위에 있으므로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가능함.</u>
	자문 2 (긍정)	- 「정보공개법」 제1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의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고 하여 해당 법률의 적용대상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로 명확히 하였고.... (중략).... <u>정보공개 법의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5천만원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및 단체도 적용대상에 포함이 가능함.</u>
	자문 3 (긍정)	- 본 조례의 적용되는 ‘ <u>공개대상기관</u> ’에 ‘ <u>서울특별시로부터</u> ’보 조금을 받는 법인, 기관 및 단체를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 되지 <u>않아 가능함.</u>

※ 행정국은 서울시로부터 5천만원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를 포함시키면 실질적 행정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관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개진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 기관
- 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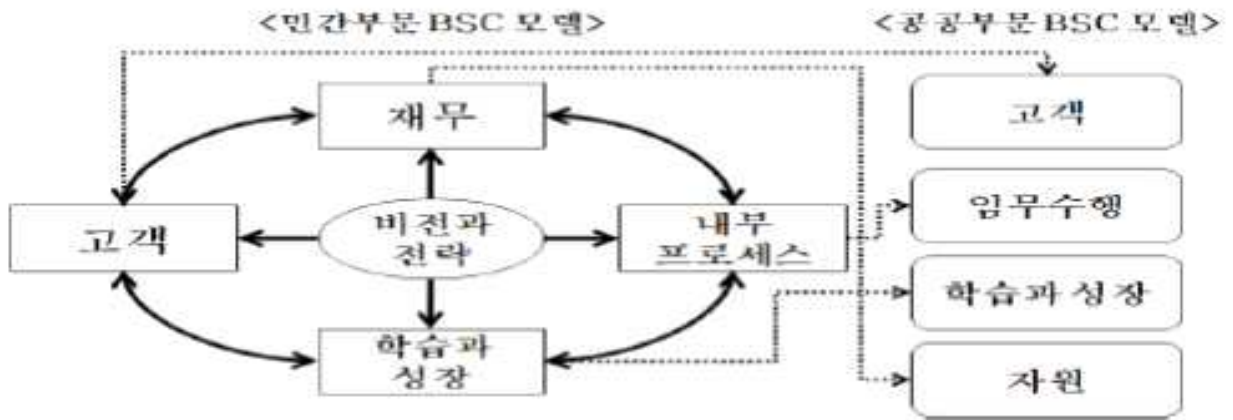
1.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기관 및 출연기관
4.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 3) 행정정보 공표 변경 항목 반영

- 안 제5조제1항제15호는 행정정보 공표 항목중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는 ‘목표관리제’를 삭제하고, ‘균형성과관리 현황’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① 집행기관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① 집행기관
1. ~ 14. (생략)		1. ~ 14. (현행과 같음)		1. ~ 14. (현행과 같음)
<u>15. 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실·국장 추진 목표 및 목표관련 예산집행 현황</u>		<u>15. 서울특별시 균형성과관리 현황</u>		<u>15. 서울특별시 균형성과관리 현황</u>

- ※ 공표란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는 의미로써 공공기관은 시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 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해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모든 시민에게 정보의 알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고 있음.
- ※ **목표관리제(MBO : management by objectives)** : 조직계층 상·하위 자간에 협의를 통해 부서 및 개인의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평가자와 수행자가 목표달성에 관하여 의견교환을 통해 평가하여 다음 목표설정에 환류하고 그 결과를 보상체계에 반영하는 관리제도를 의미함.
- ※ **균형성과관리(BSC : Balanced Scorecard)** :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목표로 전환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성과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도록 관리하는 전 과정”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목표설정, 지표개발, 성과측정(평가), 결과의 환류 등으로 구성됨.



- 조례 제5조 제1항에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적으로 공개하는 행정 정보 공표항목을 열거주의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2007년 이후 목표관리제 관련 현황은 실시하지 않고 균형성과관리 현황으로 변경(2007.8.30)되었는 바, 사문화되고 폐지된 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에 맞추어 바로잡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현재 서울시정보소통광장에서 균형성과관리(BSC) 현황을 연1회(4월) 공표하고 있음.

[서울시정보소통광장 균형성과관리 관련 누리집 화면]

번호	제목	공개부서
5	19년 하반기 기관별 성과평가 결과	평가담당관
4	2019년도 BSC 현황	평가협업담당관
3	2018년도 BSC 현황	평가담당관
2	2017년도 BSC 현황	평가담당관
1	16년도 BSC 관리현황	평가담당관

## 시정운영관리

공표대상업무를 선택하시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표항목	공표대상 업무	공표주기	공표시기	공표형태	공표부서
<a href="#">공약 실천계획 및 이행실적</a>	공약 실천계획 및 이행실적	수시	수시	홈페이지 링크	기획담당관
<a href="#">시정운영계획</a>	시정운영계획	연 1회	책자발간 후 1개월 이내	홈페이지 링크	기획담당관
<a href="#">국경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감사결과</a>	국경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감사결과	연 1회	감사 후 1개월 이내	자료첨부(PDF)	기획담당관
<a href="#">BSC기반 성과관리</a>	▶ BSC 관리현황	연 1회	4월	자료첨부(PDF)	평가담당관

- 다만, 행정정보 공표 항목 중 ‘목표관리제’는 2007년 폐지되어 실시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개정되지 못한 이유가 단일한 행정편의 주의식 사고 방식에 기인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행정국의 해명과 함께 일반 시민이 균형성과관리에 대한 용어의 이해가능성 및 구체적인 영문약어의 포함이나 명칭 조정 방안 또는 균형성과 관리지표를 알기 쉽게 공표하는 방안 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4) 공표정보 관리방법 변경(안 제5조제3항)

- 안 제5조제3항은 현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행정정보의 내용 중 ‘담당부서’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세부 공개내용 및 <u>공개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u>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③ ----- ----- ----- <u>공개주기·시기·방법</u> ----- -----.

- 행정국은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동 조례시행규칙에 사전공포 담당부서와 일치시키기기 위해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조직개편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서울시가 잦은 조직개편에 따라 실제 공포부서와 규칙에 정해진 부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책임기관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개정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나,
  - ※ 동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기재된 사전공포 담당부서는 총 354개이며, 이중 명칭 변경, 업무 이관 등으로 현재 부서와 맞지 않는 것은 52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서울시 행정조직 개편 시 본 조례 규칙도 연동하여 개편이 가능할 것이므로, 개정안과 같이 정보공포 책임 담당부서(과)를 규칙에서 삭제하여, 행정조직 체계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해당 정보공포의 책임부서를 알기가 어려워지는 시민의 알권리 제약 요인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행정편의주의적인 접근방식은 아닌지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 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은 심의회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7조의2(위원의 해촉) 공개대상 기관의 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u></p> <p><u>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u></p>		

<p>〈신 설〉</p>	<p>2. 제7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p> <p>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p> <p>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p> <p>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전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p> <p>② 안전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p> <p>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p>
--------------	---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원회 설치 시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할 사항 중 동 조례에서 누락되어 온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2018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 위원회 설치 시 고려사항 중 필수규정 명시 여부(14쪽)  
1. 위원회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의 구성 및 임기 (공무원이 아닌 비상임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
3.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인가·허가, 분쟁 조정 등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위원회 존속 기한(5년 이내 범위로 명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 ①항 및 ②항,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5. 회의의 소집 시기,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6. 위원장의 권한 및 위원장의 업무 대행자
7.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경우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특히, 안 제7조의2제2호의 해촉사유(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필요한 조항으로 보여지나, 동 사유로 해촉되는 위원의 경우에는 향후 재위촉도 금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위촉위원이나 해촉시 충분한 소명 기회 및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촉하는 등의 안전장치 또한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하겠음.

전문위원	김태한	입법조사관	김정덕
------	-----	-------	-----



#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 □ 설치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 □ 주요기능 : 우리시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운영에 대한 자문

- 심의사항
    - 정보 비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
    -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제3자 이의신청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한 사전심의
    -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직권심의 등
- ※ 처분권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며, 심의회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음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인 의무와 권한을 가진 주체는 공공기관의 장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보아 의견을 요청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과 달리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대법원 2001추 95)

## □ 구성현황 : 복수 심의회 운영 (당연직 3, 위촉직 10)

- 제1심의회(7) : 행정국장, 시설계획과장 / 교수(2), 변호사(2), 시민단체(1)
  - 제2심의회(7) : 행정국장, 언론담당관 / 교수(2), 변호사(2), 시민단체(1)  
⇒ 법정기한(이의신청일로부터 최대 14일) 내 처리를 위하여 2개 심의회 구성
- ※ 부위원장 : 행정국장(제1,제2심의회 겸임), 위원장 : 외부위원 중 호선  
※ 외부위원(2년 임기, 1회 연임가능)